

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8월 25일
- 회부일자 : 2021년 8월 27일

3. 제안이유

-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과 다르게 규정된 조항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공공조형물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도록 규정함.
(안 제9조)
-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서 기재사항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함.
(안 별지 제1호)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“7일 이내”, 이의신청 횟수를 “한 차례”로 제한을 한 규정을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“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”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,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서(별지 1호 서식) 기재사항 중 “신청자”와 “건립대상자” 등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